

사 업 연 도	· · · ~ · · ·	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	법인명	
			법인등록번호	

관리번호 -

1. 환급제한 대상세액 및 공제한도 계산

① 사업연도	명 세				
	② 경정연도	③ 과다 납부한 세액	④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	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	⑥ 환급제한 과다 납부세액{③×(⑤/④)}
⑦ 환급제한 과다 납부세액 합계					
⑧ 각 사업연도별 차감한도(⑦ X 20퍼센트)					

2. 연도별 차감 내역

⑨ 사업연도	⑩ 연도별 차감대상금액	⑪ 차감할 세액	⑫ 잔액
⑬ 합 계			

작성 방법

- ① 사업연도란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를 적고, 해당하는 사업연도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적습니다.
- ② 경정연도란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64에 따라 경정을 받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- ⑦ 환급제한 과다 납부세액 합계란은 ⑥의 환급제한 과다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- ⑨ 사업연도란은 차감대상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- ⑩ 연도별 차감대상금액란은 가산세 및 수정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.
- ⑪ 차감할 세액란은 ⑧ 각 사업연도별 차감한도와 ⑩ 연도별 차감대상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.
- ⑫ 잔액란은 ⑦ 환급제한 과다 납부세액 합계에서 ⑪ 차감할 세액의 합계 금액을 뺀 잔액을 적습니다.